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79

발의연월일: 2020. 12. 8.

발 의 자:신정훈·송언석·임호선

이규민 • 황운하 • 이병훈

송기헌 · 안호영 · 홍성국

서영석 · 민형배 · 이광재

주철현 · 윤재갑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시행되고 있음.

그러나 신규 공공기관의 설립 시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,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등을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입지 선정에 있어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5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5(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(이하 "신설 공공기관"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신설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입지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.

- ②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,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 3년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
- 2. 지방세 납부 현황
- 3. 사무소 소재 현황

4. 기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선 생 <신 설>	개 정 안 제18조의5(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(이하 "신설 공공기관"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신설 공공 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입지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장 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 원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입 지를 선정하여야 한다. ②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에 대한 심의절차, 제출서류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 3 년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

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
- 2. 지방세 납부 현황
- 3. 사무소 소재 현황
- 4. 기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인정하는 공공기관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